KOSHA GUIDE

C - 48 - 2022

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 지침

1. 목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2편 제1장 제1절(기계등의 일반기준)·제9절(양중기)·제12절(건설기계 등), 제4장 제1절(거푸집동바리 및 거푸집)·제2절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작업시 발생되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,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사용에 따른 안전보건작업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정함으로써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차량계 건설기계, 기초공사용 건설기계 및 양중기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차량계 건설기계(이하 '건설기계'라 한다)"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로서 안전보건규칙 별표 6(차량계 건설기계)에서 정한 기계를 말한다.
 - (나) "기초공사용 건설기계"라 함은 차량계 건설기계 중 안전보건규칙 별표 6(차량계 건설기계)의 항타기 및 항발기, 천공용 건설기계,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,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등을 말한다.
 - (다) "크레인"이라 함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 (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)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.